

나상	예병	ᅡ 규정
10	- 11 C	, ,, ,

관리번호	W-1.1.4	제정일	2013년 02월 15일
승인책임자	병원장	최근개정일	2016년 10월 31일
검토책임자	규정관리위원장	시행일	2016년 12월 01일
주무부서	진료부, 간호부	검토주기	3년
관련근거	의료기관인증기준1.1.4	검토예정일	2019년 10월 30일

I. 목적

낙상으로 인한 환자의 상해를 줄이기 위해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시설 및 환경 등을 고려한 낙상 예방을 위한 규정을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함이다.

Ⅱ. 정의

낙상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바닥 이외의 신체일부가 바닥면에 접지한 경우를 말하며 (Gibson,1990)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떨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침 등을 포함한다.

Ⅲ. 규정

- 1. 모든 환자는 입원 시 낙상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낙상예방활동을 수행한다.
- 2. 낙상 위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초기 환자 평가를 시행한다.
 - 1) 낙상 위험 평가도구
 - (1) 성인 Morse Fall Scale
 - (2) 소아 Humpty Dumpty Fall Scale
 - 2) 낙상 위험 평가주기

초기평가 :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24시간 이내 시행한다.

- 3) 낙상 위험도 분류 기준
 - (1) 저위험군 낙상위험 거의 없음 : 성인 0~24점 / 소아 7~11점
 - (2) 중위험군 낙상위험 보통 : 성인 25~50점
 - (3) 고위험군 낙상위험 높음 : 성인 51점이상 / 소아 12점이상

70세 이상 고령환자, 7세 이하 소아 환자

- 3. 낙상 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고위험 환자에 대한 낙상예방활동을 수행한다.
 - 1) 모든 입원환자에게 일반적인 낙상예방활동을 수행한다.

입원 시 입원생활안내문을 제공하고 낙상 예방 교육 시행 후 서명을 받는다.

- (1) 성인 공통
 - ① 간호사 호출기(병실, 화장실, 샤워실) 사용 및 침상 난간 사용법 교육
 - ② 병원 내 시설 및 사용기구(휠체어, 이동 폴대 등)의 안전한 사용에 대하여 교육
 - ③ 침대에서 이동 시 부축이 필요한 환자는 보호자 및 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함
 - ④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발에 맞는 신발을 사용
 - ⑤ 침상 위에서 일어서서 옷을 갈아입지 않도록 함
 - ⑥ 복도 및 계단 보행 시 안전 바를 잡고 보행 등
 - ⑦ 수면 전 화장실 다녀오도록 교육



- (2) 소아(12세 이하)
 - ① IV pole대에 올라타거나 침대에 선채로 놀지 않도록 교육
 - ② 도움이 필요하면 호출기로 간호사 호출
 - ③ 병실이나 복도에서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뛰어다니지 않도록 함
 - ④ side rail을 올림
 - ⑤ 필요시 보호자 상주
- 2) 고위험군 낙상 환자인 경우 낙상 예방활동 기록지를 침상에 부착하여 매 근무조마다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기록한다.
 - (1) 수면 전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함
 - (2) 병실 Rounding시 침상 Side rail 확인하고 올림
 - (3) 침상 이름표에 낙상 고위험 관리 환자 표지 게시
 - (4) 침상 및 이동기구에 낙상주의 팻말부착
 - (5) 미끄러운 바닥 닦기 ,개별 조명
 - (6) 원내 사용기구(휠체어, 워커, 이동폴대 등)의 안전한 사용법을 교육한다.
 - (7) 침대, 보행기구, 휠체어의 바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
 - (8) 호출벨을 침상 주변에 두고 사용법 교육한다.
 - (9) 침대에서 이동 시 부축이 필요한 환자는 보호자 및 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10) 지남력이 없고 의식이 혼미한 환자는 자주 관찰하고 필요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억제대 적용
- 3) 낙상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직원 간 정보공유
 - (1) 환자인식밴드에 낙상태그 부착
 - (2) 환자 침상에 낙상주의 표지 부착
 - (3) 전자챠트에 표식
- 4. 낙상 위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정기적인 재평가를 수행한다.
 - 1) 재평가
 - (1) 입원 기간 중 모든 환자는 주 1회 토요일 밤근무 간호사가 시행한다.
 - (2) 낙상 고위험 환자는 매일 시행한다. (단. 70세이상 / 7세미만의 환자는 당연 고위험군으로 재평가에서 제외한다.)
 - 2) 비정기적 재평가

환자에게 의학적 변화나 기능적 상태의 변화와 관련된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질 때

- (1) 수술/침습적 시술 후 환자
- (2) 전동 된 환자
- (3) 주요상태 변화 시: 섬망, 발작, 간성 혼수상태 등
- (4) 낙상 발생 후
- (5) 낙상 초래약물 초기 투여시 (고혈압제, 이뇨제, 강심제, 최면진정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파킨슨제, 항전간제, 항응고제 등)
- (6) 진정요법 병용한 고위험 침습적 검사 및 시술 후
- 5. 낙상 발생 가능한 장소 또는 부서에서 낙상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 : 환자의 이송을 포함한 이동경로 및 외래, 검사실, 재활운동센터, 수술실, 비수술센터
 - 1) 외래 내원한 환자의 낙상위험 스크리닝:
 - (1) 보행 장애가 있는 환자



- (2) 휠체어, 하지 Cast, 목발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환자
- (3) 시각 장애자
- (4) 어지럼증 환자
- (5) 진정치료 환자
- 2) 낙상위험 스크리닝 기준에서 한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고위험 환자로 간주하고, 낙상 예방 안내문을 이용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예방활동을 시행
- 3) 낙상 고위험 환자는 전산화면 낙상 (적색표시가 나타남)고위험으로 표시되어 직원들과 공유
- 4) 낙상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한 예방활동은 각 부서별 업무 특성 따라 시행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본으로 한다.
 - (1) 이송 시 Side rail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적용한다.
 - (2) 휠체어 제공 또는 대기의자를 우선 배려하며 필요시 환자 이동을 도와준다.
 - (3) 진료실, 검사실, 치료실 출입을 위한 이동을 도와준다.
 - (4) 소아환자 진료 시에는 보호자 상주하도록 설명한다.
 - (5) 진찰대, 검사대, 처치대 등에 환자가 오르내릴 때 도와준다.
 - (6) 바닥에 미끄러운 물질이나 용액이 없도록 한다.
 - (7) 대기실 등에 부서별 낙상 예방 안내문을 게시하고 환자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6. 낙상 예방활동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1) 낙상 발생 시 대처방법 및 보고체계
 - (1) 환자 상태 사정 후 주치의 또는 당직의, 부서장 보고
 - (2) 처방에 따라 검사나 처치 시행하고 간호기록지에 환자상태 및 처치내용, 교육내용을 기록
 - (3) 낙상위험도를 재평가
 - (4) 조치가 끝난 후 환자안전보고체계에 따라 EMR상 환자안전보고서 작성
 - 2) 모든 낙상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보고서 작성
 - 3) 낙상 발생건수 및 낙상으로 인한 중증도 분류 등을 지표로 하여 분기별 QI실에서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7. 낙상 예방 활동 성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직원과 공유한다.
 - 1) 웹문서에 게시
 - 2) 윌스 공지사항에 게시
 - 3) 식당 게시판에 게시

Ⅳ. 참고

- 1. 낙상위험 사정도구의 타당도 비교 연구(병원간호사회, 2010)
- 2. 낙상 예방 간호 실무지침서 및 요약본(병원간호사회, 2010)
- 3. WHO Global Report on Falls Prevention in Older Age(2007)
- 4. 간호안전관리지침, 개정 6판(병원간호사회, 2005)

[별첨]

- [별첨 1] 낙상 발생 시 대처방법 및 보고체계
- [별첨 2] 낙상 위험 평가 사정 도구(성인/소아)
- [별첨 3] 낙상 고위험 관리 환자 Check list
- [별첨 4] 낙상 예방 교육 자료(병동/외래)



[별첨 5] 환자 안전사고 보고서(낙상) [별첨 6] 부서별 낙상 예방 지침

입안자	규정관리위원장	
승인책임자	병원장	
서명일		



[별첨 1] 낙상 발생 시 대처방법 및 보고체계

낙상 발생시 대처방법 및 보고체계

박상 발생 환자 상태 사정 (활력징후 및 의식상태,신체손상여부 확인) 주치의 또는 당직의, 부서장 보고 박상 예방 재교육 환자안전사고 보고서(낙상)작성 및 QI실 보고



[별첨 2-1] 낙상 위험 평가 사정 도구(성인) -수정

낙상 위험 평가 사정 도구				
			작성일자:	시간: :
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과:	나이/성별 :	총점:
1. 과거 낙상 경험	○ 있음(25) ○ 없음(0)			
2. 이차 진단 (부진단)	○ 있음(15) ○ 없음(0)			
3. 보행보조	○ 가구를 잡고 보행함(30) ○ 목발/지팡이/보행기 사: ○ 보조기 사용하지 않음/경		호사가 도와줌(0)	
4. 정맥수액요법/ 헤파린 록 (heparin lock)				
5. 걸음걸미/이동	○ 장애가 있음(20) ○ 혀약함(10) ○ 정상/침상안정/부동(0)			
6. 의식/정신상태				
		총 점		
	총점 0-24점 : 낙상 위험성이 : 25-50점 : 낙상 위험성이 ! 51-125점 : 낙상 위험성이 ! (단, 기준점은 의료기관, /	거의 없음(No risk) 丈음(Low riks) 높음(High risk) 시설의 종류에 따라 D	∤르게 적용할 수 있음)	
	Mors	e Fall Assessment T	ool	



[별첨 2-2] 낙상 위험 평가 사정 도구(소아: 12세 이하) - 새로추가

	소아 낙상위험 평	가도:	구 —	
병실 /	환자명: / 등록번호:		성	별/나이: /
	위 형 요 소	해당유무		н ъ
	, , , , , , , , , , , , , , , , , , , ,	2점	1점	01 1
1	36개월 (3세 이하)	L	□ 무	
2	뇌신경질환(간질포함)	유	무	
3	재원기간 7일 이하	□ 유	□ 무	
4	위험약물 3개 이상 처방 (항우울제,항정신성약,최면진정제,진통제,신경계 약물,하제,이뇨제,심장약,혈당강하제,항고혈압제)	유	ㅁ무	
5	도울이 필요한 황동 및 기능상태(독립적이거나 부동의 경우 제외)	□ 유	ㅁ무	
6	보조기구 사용 (휠체어, 목발 등)	유	□ 무	
7	신체발달 정상	□ 유	□ 무	
8	인지발달 정상	□ 유	ㅁ무	
9	환경 (수액, 유치도뇨, 산소 등 거치)	□ 유	□ 무	
합계 0				
총점 : 18점 최저점 : 9점 저위험 : 9 ~ 12점 고위험 : 13 ~ 18점				
			작성일시 작성자	1 :

소아 낙상위험 환자 평가도구 (신현주 등, 2009)



[별첨 3] 낙상 고위험 관리 환자 Check list - 이름변경

낙상 고위험 관리 환자 check list

작성일자: 2016.07.14 시간: 16:04 (시행한 항목에 V 표시) 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과: OS01 나이/성별: D N 낙상 위험 평가 사정 시행 여부 환자 인식 밴드(분홍) 낙상 고위혐 관리환자 표지 확인 침상 팻말 침상바퀴 고정 확인 침상 난간 올리기 발에 맞는 신발 착용 설명 너스 콜 사용 교육 수면 전 화장실 다녀오기 설명 보조기구 사용 방법 교육 복도, 화장실, 샤워실, 미끄럼 주의 설명 П 자주 쓰는 물건 가까이 두기 낙상 고위험 관리 환자 표지 부착 확인 보호자 상주 여부 확인 (소아환자의 경우) 간호사 확인 추가 설명 내용 E N



[별첨 4-1] 낙상예방교육자료(병동)

12

환자 보호자를 위한 낙상예방 지침



아래와 같이 낙상의 위험이 높은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노인환자 / 어린이환자
- 이뇨제, 마약, 진정제, 향정신성 약물, 항경련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분
- · 낙상 경험, 보행장애, 혼미, 어지럼증이 있는 분
- ·전신쇠약, 시력 및 청력장애, 배뇨 및 배설장애, 골다공증이 있는 분
- · 기타 낙상의 위험이 높은 분

-	주 의 사 항	설명확인	
1	침상 난간을 항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	침상위에 서서 옷을 갈아 입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피해주세요.		
3	환자에게 필요한 물건은 침상 가까이 두어 물건을 잡으려다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4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간호사 호출기를 이용하여 반드시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5	5 입원중 자다가 깨어서 화장실에 갈 때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침상에서 내려오도록 하십시오.		
6	6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침상에서 갑자기 일어나지 마십시오.		
7	7 휠체어로 이동전 바퀴를 고정시킨 후 앉도록 하고 사용중에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8	슬리퍼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것을 사용하십시오.		
9	목욕탕은 바닥이 미끄러우므로 이용시 반드시 간호사에게 알리십시오.		
10	병실을 비우게 될 경우 담당 간호사에게 행선지를 알려주시고 밤 10시 이후 병동 이외 장소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11	1층, 9층, 10층은 병원 시설물이 아니므로 출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보호자 본인은 입원기간 동안 낙상 예방에 관한 주의사항을 설명 등	들었습니다.	
	년 월	일	
	환자(보호자)	(서명)	
	설명간호사	(서명)	



[별첨 4-2] 낙상예방교육자료(외래)

낙상주의



- ㆍ 침상을 오르내리거나, 이동시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 슬리퍼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것을 사용하세요
- 화장실은 바닥이 미끄러우므로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세요
- ·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경우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 · 휠체어로 이동시에는 바퀴를 고정시킨 후 사용하세요
- · 항상 보호자가 상주하셔야 합니다





[별첨 5] 환자 안전사고보고서(낙상) -변경

낙 상 보 고 서

환자명		등록번호	발생일시		
성 별		LF 01	확인일시		
진료과		발생장소	보고일시		
전단명		수 술 명	보고자		
대상자 입	리환자 외래원	반자 🗌 환자가족(외래/입원) 🗌 방문객 🗌 기타 ()		
1. 환자관련사항					
체중/신장			활 력칭후		
의식상태	명료	졸음	혼돈 반혼수 혼수		
활동 및 기능	독립적	부분적도움필요	항상도움필요 의존적 칭상		
보조기구 사용	사용함 (종	# :) 사용안함		
한자위험요인	- 흥분 - 평행장애 [보행장애 🗌 수	신쇠약 다비 시력장에 체위성저혈압 연장에 낙상과거력(1년이내) 해당사항없음		
투약			여된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정신치료제, 최면진정제, 로모두 기록하여 주십시오.		
11. 낙상유형			VII, 간호중재		
집 침대에서 🗌 의	료장비 🗌 의자	보행시 기타	낙상위험을 예측하는 기록이 있는가?		
111. 낙상장소			□ 예 □ 아니오		
□ 병실 □ 화장실 □ 샤워실 □ 복도 □ 계단 □ 검사실 □ 기타()			환자 및 보호자에게 낙상예방 교육을 하였는가? 예 아니오		
IV. 청대낙상시			낙상시 보호자나 의료진이 옆에 잇었는가?		
보조난간은 올려	져 있는가?	예이아니오	□ 예 □ 아니오 낙상시 간호활동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침상바퀴는 고정		에 아니오			
침상위의 물건에		1? 🗌 예 이 아니오			
억제대는 사용하		예기아니오			
V. 미끄러지거나			VIII. 의사에게 보고		
			보고 받은 의사명 :		
바닥에 수액이나 물이 있었는가? 🔲 예 🗌 아니오			보고시간 : :		
주변의 물건에 걸려 넘어졌는가? 🔲 예🗌 아니오			의사의 환자상태확인 시간 : :		
발에 맞는 신발원	를 신고 있었는가	? 🗌 예 🗌 아니오	의사의 소견 및 처치 :		
			검사 :		
VI. 낙상발생상용	와 간략히 기록		IX, 낙상결과		
11. 10800			손실 없음 환자의 신체적 손상		
			환자의 경제적 손실 병원의 경제적 손실		
			X. 환자의 신체적 손상 및 치료		
			신 no injury abrasion/bruising pain 체 hematoma laceration fracture 을 head injury contusion 기타		
			지 observation simple dressing surture cast operation 기타		



[별첨 6-1] 부서별 낙상 예방 지침 (수술실)

<수술실 낙상 예방 지침>

1. 월 1회 낙상 규정을 토대로 부서 내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2. 낙상 예방 활동을 한다.

- 1) 수술실 및 회복실 벽에 `낙상주의` 표시 및 체크리스트를 부착한다.
- 2) 낙상예방을 위한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 (1)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발견 즉시 제거한다.
 - (2) 환자 이동 경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 (3) 환자가 이동카트에 누워있는 경우 양쪽 난간은 항상 올려놓고 ,바퀴를 고정한다.
- 3) 수술침대로 이동 시 낙상의 위험성이 크므로 이동카트의 바퀴를 고정하고 이동시 직원이 2명이 상 참여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 4) 전신마취 후 회복실에서 관찰 중인 환자가 있을 때는 의료인 1인 이상이 keep을 한다.
- 5) '낙상 고위험 관리 환자'를 파악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 6) 두발로 걷거나, 목발을 짚는 환자는 수술시 입실/퇴실 시 직원이 동행한다.
- 7) 수술 및 시술 환자에게 낙상예방 교육을 한다.
 - (1) 수술 침대가 비좁고, 침대로 이동 시 낙상의 위험성을 알려 환자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일수 있도록 한다.
 - (2) 수술 및 시술 후 수술침대 및 이동카트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한다.
- 8) 낙상 예방 지침을 부서 내 게시물을 통해 공유한다.

3. 낙상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 1) 낙상사고 발생 시 환자 상태를 살핀 후 주치의 또는 당직의,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2) 처방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한다.
- 3) 낙상 예방 활동을 재시행 한다.
- 4) 간호기록지에 환자상태, 처치 및 교육 내용 등을 기록한다.
- 5) 환자 안전사고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별첨 6-2] 부서별 낙상 예방 지침(외래)

<외래 낙상 예방 지침>

1. 낙상 규정을 토대로 월1회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2. 낙상예방 활동을 시행 한다,

- 1) 외래 진료실 및 대기실 벽에 `낙상주의`표시를 부착한다.
- 2) 외래 대기실에 있는 신장계 및 혈압계에도 `낙상주의`표시를 부착한다.
- 3) 낙상예방을 위한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 (1)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발견 즉시 제거한다.
 - (2) 환자 이동 경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 (3) 환자가 이동카트에 누워있는 경우 양쪽 난간은 항상 올려놓고, 바퀴를 고정한다.
- 4) 이동침대로 이동 시 낙상의 위험성이 크므로 이동카트의 바퀴를 고정하고 이동 시 직원이 2명이상 참여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 5) '낙상 고위험 관리 환자'를 파악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 (1) 외래 내원한 환자 중 목발 및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보행 장애가 있는 환자,
 - (2) 휠체어나 침대로 이동하는 환자의 경우 낙상 고위험 관리 환자로 분류하여 낙상 고위험 관리 환자인식밴드를 착용시키며 낙상 예방 안내문을 제공 하도록 한다.
 - (3) 입원 환자 중 환자인식밴드를 착용하는 환자는 낙상 고위험 관리 환자임을 확인하여 낙상 예방에 주의를 기울인다.
- 6) 목발을 짚는 환자이거나 휠체어를 타는 환자는 외래 진료나 검사 시 보호자와 동행 하도록 하며 보호자가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한다,
- 7) 외래에서 수면내시경 후나 진정요법 후 환자에게 낙상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1) 환자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2) 수면 내시경 후나 진정치료 후 환자에게 침대나 이동침대에 바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한다.
- 8) 소아 환자 (12세 이하)의 경우 진료 및 처치 시 보호자가 함께 있도록 한다.
- 9) 낙상 예방 지침을 부서 내 게시물을 통해 공유한다.

3. 낙상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 1) 낙상사고 발생 시 환자상태를 확인 후 주치의 또는 당직의, 부서장에게 보고 한다.
- 2 처방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한다.
- 3) 환자 및 보호자에게 낙상 예방 재교육을 시행한다,
- 4) 간호기록지에 환자상태, 처치 및 교육 내용 등을 기록한다.
- 5)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별첨 6-3] 부서별 낙상 예방 지침(원무과)

<원무과 낙상 예방 지침>

- 1. 월 1회 낙상 규정을 토대로 부서 내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 2. 낙상예방 활동을 시행 한다.
 - 1) 창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예방활동
 - (1) 거동불가 환자의 경우 접수 및 수납은 보호자가 대신하도록 한다.
 - (2) 창구 앞과 로비에 물기가 있는지 체크하여 물기가 있을 시 즉시 제거한다.
 - (3) 거동불가 환자가 보호자 없이 입원 수속이나 퇴원 수속 등이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휠 체 어: 수속 시 바퀴는 고정시키도록 한다,

이동침대: 입원수속의 경우 침대에 누워서 각종 약정서 및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직원이 직접 주사실 또는 내시경실로 찾아가 업무처리를 한다.

- 2) 환자이송(앰블런스)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예방활동
 - (1) 병동 침대 및 휠체어에서 이동침대로 환자 이동시 침대 고정 후 최소 2인 이상의 직원이 위치 분담하여 동참하도록 한다.
 - (2) 이동침대 이동시 사이드레일을 항상 올리며, 안전벨트를 착용 시킨다.
 - (3) 앰블런스 환자실에 이동침대 고정 및 탈거 시 최소 2인 이상 동참한다.
- 3) 낙상 예방 지침을 부서 내 게시물을 통해 공유한다.
- 3. 낙상 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 1) 낙상사고 발생 시 환자 상태 확인 후 주치의 및 당직의,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2) 처방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3) 환자 및 보호자에게 낙상 예방 재교육을 시행한다.
 - 4)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별첨 6-4] 부서별 낙상 예방 지침(간호부-환자이송)

<환자 이송 시 낙상 예방 지침>

- 1. 월 1회 낙상 규정을 토대로 부서 내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 2. 낙상 예방 활동을 한다.
 - 1) 화자 이송 시
 - 침대차를 이용하여 환자 이동시에는 침대차의 양쪽 난간은 항상 올려 놓는다.
 - 환자가 침대에 누워서 대기시에는 항시 바퀴를 고정한다.
 - 이동침대에 환자가 누워 있을시 환자를 혼자 두지 않고 보호자나 직원이 동행하도록 한다.
 - 2) 이동침대 보관 시
 -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공간에 바퀴를 고정하여 둔다.
 - 3) '낙상 고위험 관리 환자'를 파악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 4) 낙상 예방 지침을 부서 내 게시물을 통해 공유한다.
- 3. 낙상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 1) 낙상사고 발생 시 환자 상태를 살핀 후 주치의 또는 당직의,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2) 처방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3) 낙상 예방 활동을 재시행한다.
 - 4)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별첨 6-5] 부서별 낙상 예방 지침(영상의학과)

< 영상의학과 낙상 예방 지침 >

1. 월1회 이상 낙상 예방 규정을 토대로 부서 내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2. 낙상예방 활동을 시행 한다,

- 1) 영상의학과 모든 촬영실 및 탈의실, 조정실 벽에 '낙상주의' 표시를 부착한다.
- 2) 낙상예방을 위한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 환자 이동 경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 3)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겨우 양쪽 난간은 항상 올려놓고, 바퀴를 고정한다.
- 4) 휠체어로 촬영실에 들어온 경우 휠체어 양쪽 바퀴를 고정시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촬영이 끝난 후에도 바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환자분이 휠체어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 5) 환자가 촬영 TABLE에 올라가거나 내려올 시 발판 등을 딛고 올라가거나 내려올시 항시 옆에서 부축하도록 한다.
- 6) 검사용 TABLE은 올라가거나 내려올시 TABLE을 최대한 내리도록 한다. TABLE 높낮이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발판 등을 사용하여 낙상예방에 주의한다.
- 7) 환자가 침대로 촬영 TABLE로 이동시 항시 바퀴를 고정한 상태에서 침대가 밀리지 않도록 직원이 몸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주위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같이 이동하도록 한다.
- 8) 환자 촬영 시 서서 촬영이 힘든 환자의 경우 누워서 촬영을 실시하며 반드시 서서 촬영을 해야 하는 검사의 경우 보호자 또는 방사선사가 옆에서 부축한 상태에서 촬영을 실시한다.
- 9)`낙상 고위험 관리 환자` 여부를 파악하여 검사 시 낙상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 가. 외래환자 : 휠체어, 침대, 목발을 이용하여 촬영실에 온 경우.
 - 나. 입원환자 : 환자인식밴드 착용 환자는 촬영 전 낙상예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한다. 침대로 이동시 낙상의 위험성을 알리어 환자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인다, 환자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10) 소아 환자 (12세 이하)의 경우 검사시에도 보호자가 함께 있도록 한다.
- 11) 낙상 예방 지침을 부서 내 게시물을 통해 공유한다.

3. 낙상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 1) 낙상사고 발생 시 환자상태 확인 후 주치의 또는 당직의,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2) 처방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3) 환자 및 보호자에게 낙상 예방 재교육을 시행한다.
- 4) 환자 안전사고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별첨 6-6] 부서별 낙상 예방 지침(임상병리실)

< 임상병리실 낙상 예방 지침 >

1.월 1회 낙상 규정을 토대로 부서 내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2.낙상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

- 1) 임상병리실 벽면과 심전도실 벽면에 `낙상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심전도실 침대 난간에 `낙상주의` 게시물을 부착한다.
- 2) 심전도를 측정시엔 직원이 항시 함께 상주한다.
- 3) 낙상예방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 가. 환자 이동경로에 방해되는 물건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 나. 채혈대 의자는 바퀴가 없는 의자를 배치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않게 하며, 심전도실의 침대바퀴는 고정한다.
 - 다. 바닥에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건 및 액체가 확인되면 즉시 제거한다.
- 4) '낙상 고위험관리 환자'를 파악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 가. 채혈실에서 심전도실로 이동시 직원 또는 보호자가 상주하도록 한다.
 - 나. 심전도실에서 화장실로 이동시 직원 또는 보호자가 상주하도록 한다.
- 5) '낙상 고위험 관리 환자'를 파악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 6) 소아 환자 (12세 이하)의 경우 검사 시 보호자가 함께 있도록 한다.
- 7) 낙상 예방 지침을 부서 내 게시물을 통해 공유한다.

3. 낙상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 1) 낙상사고 발생 시 환자 상태 확인 후 주치의 또는 당직의,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2) 처방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3) 환자 및 보호자에게 낙상 예방 재교육을 시행한다.
- 4)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별첨 6-7] 부서별 낙상 예방 지침(비수술센터)

< 비수술센터 낙상 예방 지침>

- 1. 월 1회 이상 낙상 규정을 토대로 부서 내 교육으로 실시한다.
- 2. 낙상예방 활동을 시행한다.
- 1) 비수술센터 입실 시
 - 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휠체어나 이동 침대를 이용하며 이동침대의 양쪽 난간은 반드시 올린 상태를 유지한다.
 - 나. 휠체어나 이동 침대로 옮길 때는 반드시 바퀴고정을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 다. 신경주사 치료후에는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 라. 병동 환자는 거동 가능 환자/ 거동 불가능, 낙상 고위험 관리 환자 여부를 확인 후 거동이 힘들 때는 이동 침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2) 신경주사치료 전/후

- 가. 침대에 올라갈 때는 계단이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교육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침대에 안탄 경우)는 워커 및 휠체어를 이용하며, 직원이 부축하도록 한다.
- 나. 이동 침대로 이동 할 때는 항상 직원 2명이 함께 옮기며, 옮기기 전 바퀴는 고정한다.
- 다. 신경주사치료 후 침상에서 내려올 때는 약물로 인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침상에서 내려 올 수 있도록 설명하며, 거동을 돕는다.

3) 안정시

- 가. 침상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항상 침상난간을 올리도록 하고 침상난간이 올려져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 나. 환자에게 낙상 예방교육을 한다.
 - 침상에 누워 있을 경우 항상 침상난간을 올리도록 교육한다.
 - 침상에서 내려올 때는 침대 난간사이로 내려오지 말고 침상난간을 내린 후 침상에서 내려오도록 한다.
 - 호출벨의 위치를 알려주며, 도움이 필요할시에 호출벨을 누르도록 한다.
 - 다. 10~15분 회복 후에도 어지러움이 지속되면 좀 더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신경주사치료 후에 귀가시에는 어지러움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단보다는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설명한다.

4) 환경점검

- 가. 바닥에는 미끄러운 용액이나 물이 떨어져 있지 않는지 점검하며, 발견 즉시 제거하도록 한다.
- 나.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없도록 항상 점검한다.
- 다. 회복실과 신경주사 치료실에 낙상주의 표시판을 붙인다.
- 5) 낙상예방지침을 부서 내 게시물을 통해 공유한다.
- 3.낙상사고 발생 시 환자 안전사고 보고체계에 따라서 보고한다.
 - 1) 낙상사고 발생시에 환자 상태를 살피고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2) 처방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한다.
 - 3) 환자 및 보호자에게 낙상 예방 재교육을 시행 후 간호기록지에 환자상태, 처치 및 교육 내용을 기록한다.



[별첨 6-8] 부서별 낙상 예방 지침(병동)

<병동 낙상 예방 지침>

- 1. 월 1회 낙상 규정을 토대로 부서 내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 2. 낙상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
 - 1) 낙상 평가를 시행한다.
 - 가. 환자입원 시 낙상 위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낙상 초기 평가를 시행한다.
 - 나. 모든 입원 환자는 주 1회 (토요일) 낙상 재평가를 시행한다.
 - 다. 낙상 고위험 환자의 경우 매 근무조마다 재평가를 시행한다.

성인: 낙상 평가 결과 51점 이상

소아: 낙상 평가 결과 13점 이상

- 라. 의학적 변화 및 기능적 상태의 변화와 관련된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될시 비정기적인 재평가를 시행한다. (어지럼증/ 낙상 발생/ 의식장애 등)
- 마. 다음 사항의 경우는 평과 결과에 관계없이 매 근무시마다 시행한다. 7세 미만 소아 / 70세 이상 성인

2) 일반적 예방 활동

- 가. 모든 입원환자의 침상에 낙상 주의 표지판을 부착하며, 이동기구 (휠체어, 이동침대, 워커, 수액걸이) 등에도 낙상 주의 표지판을 부착한다.
- 나. 낙상 위험이 높은 화장실, 샤워실에 낙상 주의 표지판을 부착한다.
- 다. 모든 환자에게 입원 시 입원생활 안내문을 제공하며 낙상 예방 교육 시행 후 확인 서명을 받는다.
- 라. 환자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엔 보호자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 하도록 설명한다.
- 마. 호출벨 위치 및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 바. 바닥에 낙상을 유발 할 수 있는 물건 및 액체가 있으면 확인 직시 제거하도록 하며, 휠체어, 이동침대, 워커 등 이동기구의 바퀴를 월 1회 점검한다.
- 사. 병실 및 화장실, 샤워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호출벨 작동 여부를 확인 후 수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관리과에 연락하여 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아. 휠체어와 운반침대 등 바퀴가 있는 이동기구를 이용하여 환자 이동시 양쪽 바퀴를 고정시킨 후 사용하고 이동침대는 반드시 양쪽 난간을 올리고 이동시키며 사용 방법을 교육한다.

3) 낙상 고위험 관리 환자의 예방활동

- 가. 낙상 고위험 관리 환자로 분류되면 환자인식밴드를 착용시키며, 침상 앞 이름표에 낙상 고위험 관리 환자 표지를 부착한다.
- 나. 전산 상 처방 및 간호 화면에서 낙상 점수가 분홍색으로 표기된다.
- 다. 침상에서 내려올시 보호자 또는 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라. 소지품을 환자 손에 닿는 곳에 두도록 한다.
- 마. 크기가 잘 맞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도록 설명한다.
- 바. 혼돈이 심하거나 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메인 간호사실과 가까운 병실로 옮겨 관찰하도록 한다.
- 사. 빈뇨나 긴박뇨가 있는 경우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아. 수면 전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설명한다.

4)소아 환자의 예방 활동

- 가. 소아환자 (12세 이하) 입원시엔 항시 보호자가 상주하도록 교육한다.
- 나. 소아 환자 이동시 보호자 또는 직원이 항상 동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7세 미만의 소아 환자의 경우 낙상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낙상고위험관리환자로 분류하여 낙상 고위험 관리 환자의 예방 활동에 따르도록 한다.
- 5) 낙상 예방 지침을 부서 내 게시물을 통해 공유한다.

3. 낙상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 1) 낙상사고 발생 시에 환자 상태 (의식상태, 활력징후, 신체손상여부)를 살피고 주치의 또는 당직의,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2) 처방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한다.
- 3) 환자 및 보호자에게 낙상 예방 재교육을 시행한다.
- 4) 간호기록지에 환자상태, 처치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다.
- 5) 환자 안전사고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별첨 6-9] 부서별 낙상 예방 지침(재활운동센터)

<운동재활센터 낙상 예방 지침>

1. 낙상예방 규정을 토대로 월 1회 이상 부서 내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2. 낙상 예방 활동을 한다.

- 1) 재활센터 벽과 침대에 `낙상주의`표지를 부착한다.
- 2) 낙상예방을 위한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 가. 환자 이동 경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 나. 콜벨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수시 확인하며, 수리가 필요할시 즉시 관리과에 연락하여 수리되도록 조치한다.
 - 다.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통로를 확인한다.
 - 라.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이나 바닥에 액체를 확인 시엔 즉시 제거한다.
- 3)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경우 양쪽 난간은 항상 올려놓고, 바퀴를 고정한다.
- 4)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타고, 내릴시 바퀴 고정을 시행한다.
- 5) 치료 침대에 올라가거나 내려올 시 낙상의 위험성을 알려 환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
- 6) `낙상 고위험 관리 환자` 여부를 파악하여 낙상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 가. 외래환자 : 휠체어, 침대, 목발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경우.
 - 나. 입원환자 : 환자인식밴드 착용 환자
 - 치료 전 낙상예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 한다
 - -침대로 이동 시 낙상의 위험성을 알리어 환자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인다.
 - -환자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7) 소아 환자 (12세 이하)의 경우 치료시에도 보호자가 함께 있도록 한다.
- 3. 낙상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 1) 낙상사고 발생 시 환자 상태 확인 후 주치의 또는 당직의,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2) 처방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3) 환자 및 보호자에게 낙상 예방 재교육을 시행한다.
 - 4)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